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에 임한다.

제3조(주문의 녹음등) 회사는 고객의 주문사실 및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기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국내·외의 관계법규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과 제 조치를 항상 준수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개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중개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 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9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위탁증거금의 예탁·반환·추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제10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거래내역, 자금의 송금·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제11조(고객정보의 보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내용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가 고객의 변경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도래한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외국선물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과생상품시장거래중 개계좌 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19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장외거래에 대한 적용특례) 회사와 고객은 필요한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과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